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(T/K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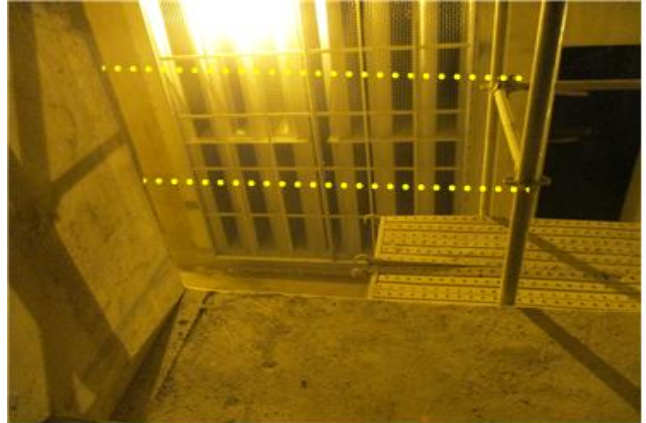
□ 점검일시 : 2017.09.21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,홍민철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937 S2 본선환기구 환기통로 구조물 단부로 추락 위험이 있으니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바람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#2 본선환기구 덕트 벽체 거푸집 조립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대를 걸수 있는 곳이 없어 위험하니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근로자 교육바람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정거장 환기구 옆 공간이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추락방지시설(난간 등) 설치 혹은 되메우기를 실시하기 바람,  
 - 수중펌프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분전반 단자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충전부 방호를 실시하기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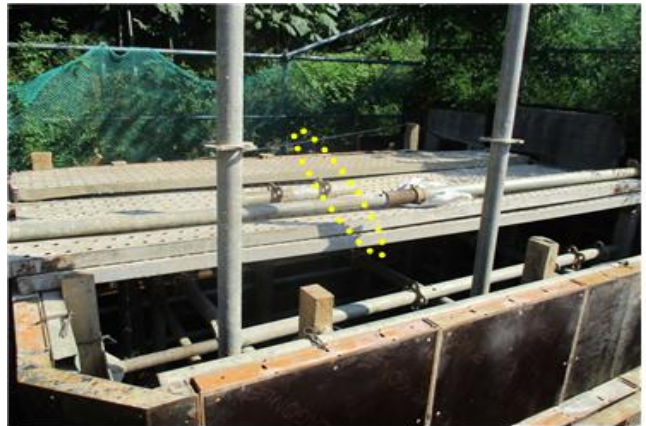


부 등의 방호조치), 301조(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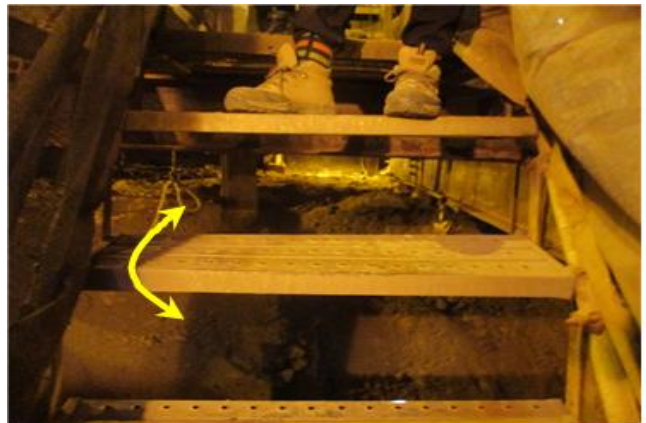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#2 본선환기구 덕트 벽체 거푸집 조립을 위해서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기 곤란하니 이동중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블록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바람,  
 - 작업발판(길이 3m)의 길이가 길어 울렁이니 중간에 보강재를 설치하여 받쳐주기 바람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S1 가설 계단의 답단에 유격이 심해 통행 중 비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보수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정거장 환기구 출입용 임시계단의 고정미흡하여 흔들림이 발생하고 일부 발판이 훼손되어 있으니 보수 후 사용하기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  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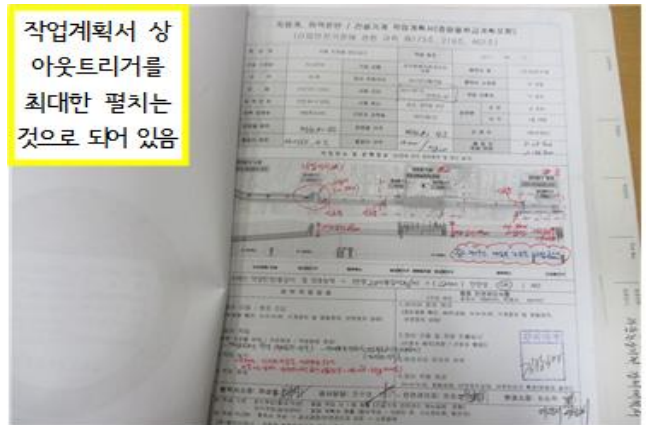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정거장 용단 작업중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용단작업이 끝나고 작업자가 현장을 떠나고 나서 남아있던 불씨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불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8조(방화담당자의 지정 등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정거장 상부 복공 철거작업중인 카고크레인(인천80사3253)은 한쪽 아웃트리거만 펼친 상태로 작업중으로 도로상황 상 상기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한쪽 아웃트리거만 펼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방법 및 안전하중을 검토하여 감리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기 바람,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7 S2 본선환기구 작업장은 집중호우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될 수 있으니 모래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현장내 비치하여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정거장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복공홀에 구두굽이 빠져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모두 흙캡을 씌우기 바람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 S1 본선환기구 본체 구조물의 시트보호재가 훼손되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8정거장 환기구 외부 방수시트 보호재가 일부 훼손되어 있으니 보수 후 포장하기 바람





○ 감전재해 예방(도시철도건축부)

- 938정거장 패널 작업자중으로 미접지 상태로 용접작업 하고 있으니, 접지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, 기구의 접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8(기계, 기구의 접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건축부)

- 938정거장 지하1층 통로에 파이프가 놓여있어 근로자 이동 시 전도위험이 있으니 자재를 정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건축부)

- 938정거장 천정 패널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비계에 추가작업대(말비계)를 설치하고 작업중이니 말비계 사용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(난간 높이조정, 말비계 고정 등) 후 사용하거나, 말비계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-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7(이동식비계)

